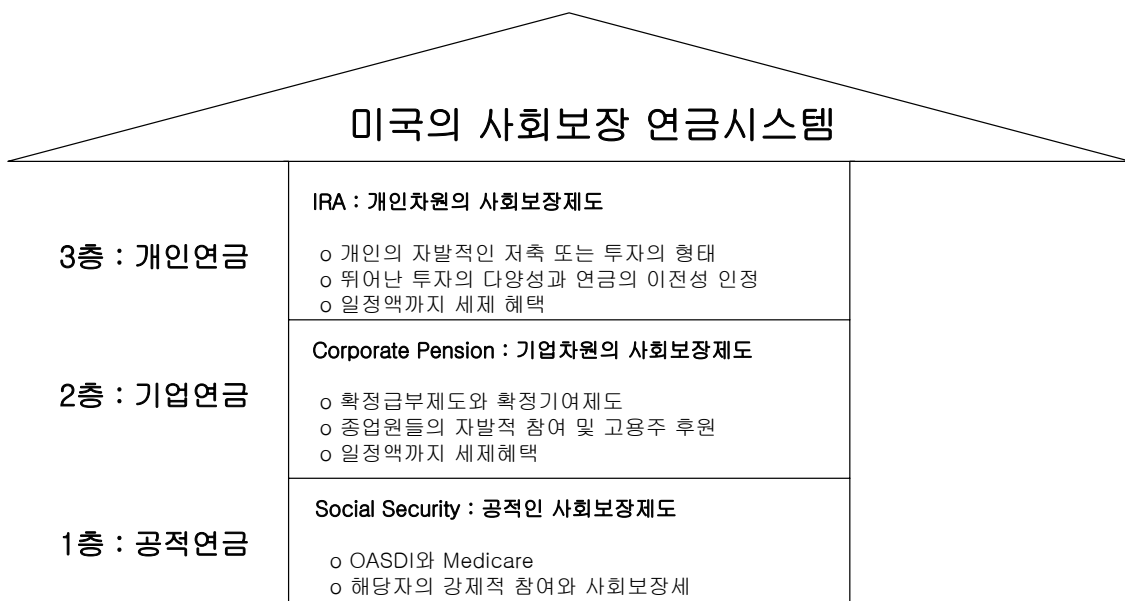


□ 고령화시대 대비 美 IRA형 개인연금 시스템 구축

1. 미국 연금시스템과 개인연금계좌(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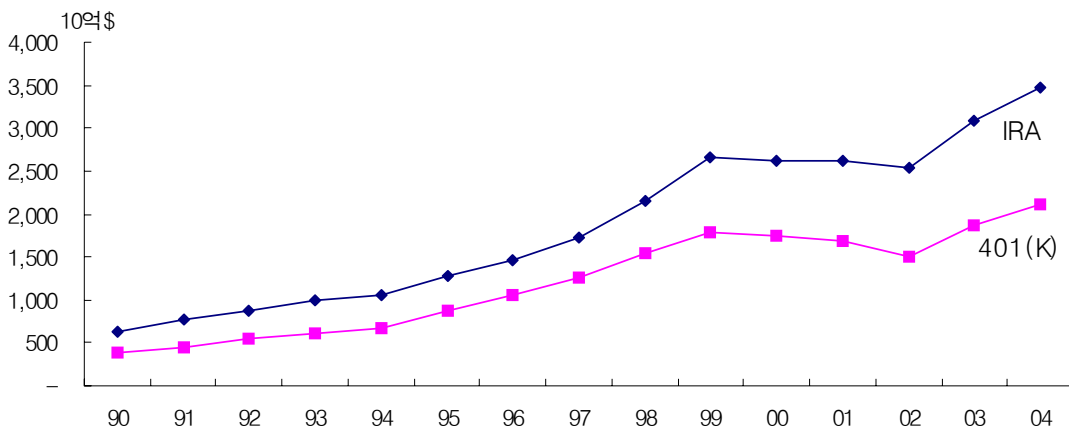
○ 미국 개인연금계좌(IRA)는 90년대에 들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재 401(K) 기업연금과 함께 미국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함

- 미국 연금시스템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구성됨
 - 공적연금(Social Security) : 노령자(Old Age), 사망자 유족(Survivor), 장애인(Disabled) 등을 위한 공적 보험인 OASDI와 공적 노령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로 구성
 - 기업연금 (Corporate Pension) :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종업원과 함께 재원을 각출하여 퇴직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확정금부형(Defined Benefit; DB)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으로 구분
 -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 개인차원에서 적립하는 연금임
-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 제도와는 달리 개인연금계좌(IRA)는 개인의 자발적인 금융저축, 또는 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연금 저축임
 - 1974년 종업원 퇴직연금안전법(ERISA)에 의해 도입됨
 - 연금의 이전성이 허용되고 일정액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짐



- IRA는 1974년 설립 이후 견조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상품인 401(K)와 함께 미국의 가장 보편적인 연금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 2003년말 현재 미국의 퇴직금시장 규모는 11.6조 달러이며, 이 중 개인연금 규모는 전체의 1/4 정도인 3.0조 달러임 (2004년말 현재 3.5조 달러)
 - 2004년말 현재 미국 가계의 40.4%인 4,500만여 가구가 IRA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IRA 소유 가구들은 자신의 금융자산의 1/5 이상을 다양한 IRA로 보유하고 있음
- * 401(K)란 근로자 및 기업주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을 개인 퇴직계좌에 적립하고 은퇴 후에는 낮은 소득세율로 인출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기업연금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90년대에 들어 IT기술의 발달과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급성장함

< 미국 IRA와 401(K) 추이 >



자료 : 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 IRA의 종류와 특징

- IRA는 여타 연금제도와 달리 연금 각출여부, 각출금액, 투자수단과 투자기관, 인출여부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완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인출 전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이 면세로 증식되며, 노년에도 가입할 수 있음
 - 연간 \$2,000까지 소득공제 혜택
 - 70.5세 전까지 가입이 허용되며 59.5 ~ 70.5세 연령에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각출과 인출을 모두 허용

- IRA 가입자들은 연금계정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짐
 - 연금자산 투자를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가입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재정상황에 따라 각출금의 조절이 가능함
 - 직장의 이직이나 퇴직에 대해서도 IRA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개인의 투자계획에 따른 운용이 가능
- IRA는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전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망시 상속이 가능함
 - 1가구 2계좌 이상 보유도 가능
- (변형 IRA) 전형적인 IRA 외에도 계약자들의 투자 목적이나 재정상황, 환경변화에 맞춰 여러 형태의 IRA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Roth IRA¹⁾) 70.5세 이후에도 인출을 강요받지 않고 계속해서 각출할 수 있으며 이를 상속할 수 있음
 - (사용자 후원 IRA) 기업연금에 가입된 고소득 종업원의 경우 소득공제 IRA 가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비공제 IRA에의 가입은 허용
 - 연금증식소득에 대해서는 인출 시 까지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가능
 - SEP IRA, SAR-SEP IRA, SIMPLE IRA 등
 - 한편 자녀들의 대학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교육 IRA의 경우 2001년 7월 Ownership of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로 변경됨

< 미국 가구의 IRA 소유 현황 >

	가구수 (백만가구)				비율 (%)			
	'01	'02	'03	'04	'01	'02	'03	'04
어떤 형태의 IRA	43.0	43.2	46.1	45.2	39.7	39.5	41.4	40.4
전통적 IRA	35.1	35.7	37.1	36.7	32.4	32.7	33.3	32.8
Roth IRA	12.2	13.2	16.2	14.3	11.3	12.1	14.6	12.8
사용자후원 IRA	8.3	8.5	8.3	9.6	7.2	7.7	7.8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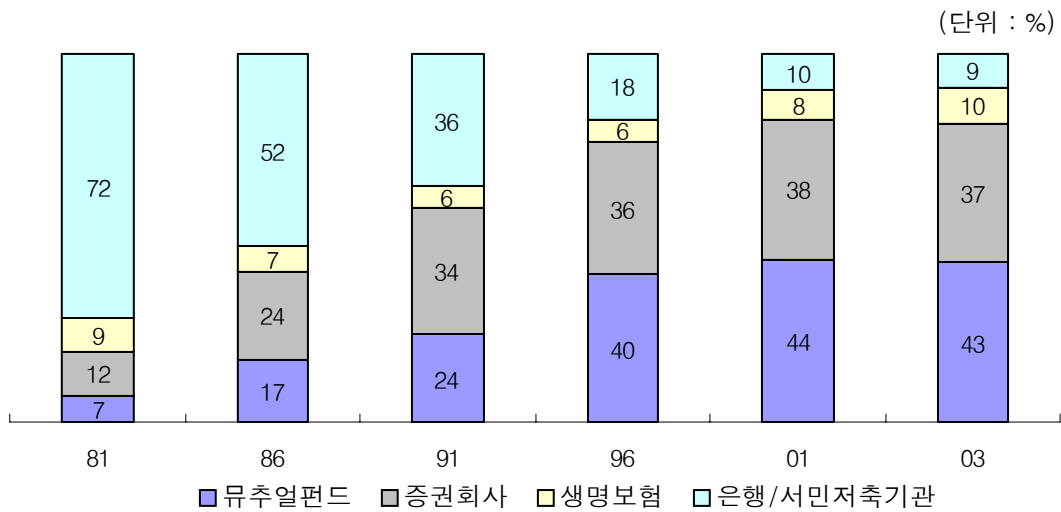
자료 : 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1) 美 상원의원 William V. Roth Jr.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로스(Roth) IRA는 1997년에 제정된 세금감면법 (Taxpayer Relief Act)에 의해 1998년 1월 신설됨.

- (IRA 장점) 기업연금제도에 비해서 분배의 다양성과 자산운용의 유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산의 안전성 면에서도 우위가 있음
 - (분배의 다양성) IRA 계약자는 IRA 본래 취지에 맞는 연금 또는 일시금 등 다양한 형태의 분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기업연금제도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연금을 급부 받음
 - (자산운용의 유연성) IRA는 증권회사 계정을 통해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 등 자산운용의 유연성이 높음
 - 투자측면에서 기업연금제도는 신탁운용기관을 지정함
 - (자산의 안정성) IRA 가입자들은 개인이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므로 비교적 소액의 세금과 벌금만으로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음
 - 기업연금제도는 기업부실화에 따른 연금자산의 고갈 위험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

- (IRA 취급 금융기관) IRA 계약자는 은행, 저축대부조합(S&L), 뮤추얼펀드,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다양한 기관에 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 IRA 계약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운용수단을 선택하고 실적에 따른 급부를 부여받게 됨
 - 은행 및 저축기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설 수수료를 부과하며, 일정 금액에 대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음
 - 증권회사의 중계 수수료(brokerage) 계좌에 개설하는 직접 운용형 IRA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감수해야 함
 - 뮤추얼펀드는 광범위한 투자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일반적인 투자 수단이 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 고정액 또는 변액연금의 상품에 대해 IRA를 개설
 - 은행/서민저축기관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는 대신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증권회사를 통한 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과 저금리 기조에 따라 IRA 자금이 주식시장 특히 뮤추얼펀드로 유입

< 미국 IRA 자산의 운용기관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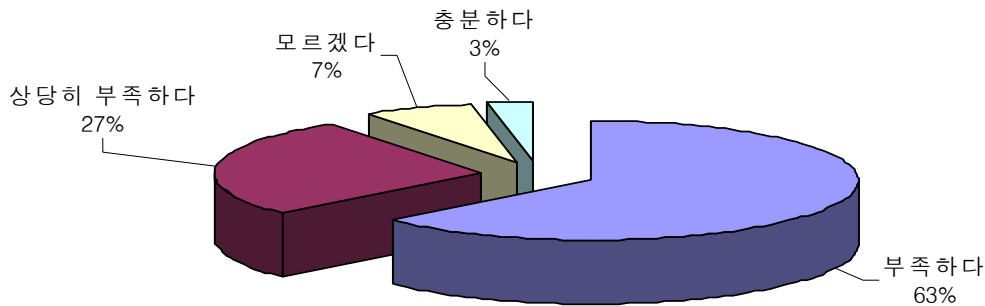


자료 : 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3. 국내 개인연금의 발전 과제

-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공적연금) 및 퇴직연금(기업연금) 시스템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 (국민연금)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한정될 만큼 공적 사회복지의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연금마저도 그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임
 - 단기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예산확보 전망이 매우 어두운 실정에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국민연금이 현행 상태로 지속될 경우에 2042년에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함
 - (퇴직연금) 현행 퇴직금제도는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중간 정산제 도입 등으로 노후보장 소득제도로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선진국 형태의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나, 기업 자금부담 증가로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미지수임

< 국민연금/퇴직연금 충분성 여부 >



자료 : 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05. 6. 1).
 주 : 서울시 직장인 상대 설문조사 결과.

○ 이처럼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의 역할이 의문시되는 국내 현실에서 개인 연금 시장의 발전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IRA와 같은 개인연금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함

- 민간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상품 판매는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제도 및 규모면에서 미미한 상황

- 1994년 국내 개인연금이 처음 판매된 이후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노후생활 대비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부족
- 2003년말 기준으로 국내 개인연금시장 규모는 29조원(보험사 17.9조원, 은행 9.1조원, 투신사 2.0조원)으로 국민연금 규모(112조원)의 25%에 불과
- 특히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어 저축성 개인연금의 배당률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 개인들은 개인연금을 더욱 외면할 가능성이 높음

- (정책 과제) 미국 IRA와 같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갖춘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되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함

- 소득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분배 시까지 각종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강구
- 각출금액, 투자수단, 투자기관, 인출여부, 인출 방법 등에 대한 가입자들의 완전한 통제권을 보장
- 인구 고령화에 대비 노년에도 가입할 수 있고, 사망 시 상속도 가능하도록 제

도를 보완

- 장기자본시장의 육성 및 자산운용수단의 다양화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후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연금 제도의 핵심이 될 펀드들의 운용 성과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금융기관 과제) 계약자들이 서로 다른 재정상황과 투자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시급함

- 개인연금의 안전성 보장, 수익성 제고, 편리성 부여 등을 고려
-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다양한 펀드상품 개발과 수익성 제고 방안이 중요함

< 국내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상품 비교 >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보험사
상품명	연금신탁 (신개인연금저축)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적격)	연금보험(비적격)
비과세여부	연금불입액의 100%,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안됨
가입 자격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15세 이상
소득세	연금 소득세 5.5%			10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립 방식	자유적립	자유적립	정액적립	다양함
적립 한도	분기 300만원	분기 300만원	한도 없음	
연금 개시	55세 이후			47 ~ 55세
예금 보호	가능	안됨	가능	가능
원금 보장	가능	안됨	가능	가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3월 금융기관 간 계약이전 허용 ○ 개인연금신탁 (94.6~00.6) → 신개인연금신탁 (00.7~00.12) → 신개인연금저축 (01.2~) 	○ 적립형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변액연금보험의 비중이 증가 ○ 보험업계의 개인연금보험은 보험보장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는 만큼 이자가 적음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